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어 린 이 용 가 족 제 품 부속서 1

(Leather products for Children)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G 3116** 구두
-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법
-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
-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 **KS M ISO 17226-2**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제2부 : 비색분석법을 이용한 방법
-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용어의 정의

3.1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품질표시 기준 부속서 3 가죽제품의 3.1항(3.1.1 ~ 3.1.9)**에 따른다.

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1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3.세부분류**에 따른다.

3.2.2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3.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작은부품 부착강도 (5.1.1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5.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1.1.3**에 따른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작은부품이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팅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4.1.2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섬유 부위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을 제외하는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적용 대상으로 본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에서 밑창은 제외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허 용 치	
		유아용	어린이용
폼알데하이드 (mg/kg) ¹⁾		20 이하	75 이하
염소화페놀류(PCP) (mg/kg) ^{1), 2)}		0.5 이하	5.0 이하
6가크로뮴 (mg/kg) ¹⁾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¹⁾		0.1 이하	
아릴아민 (mg/kg) ^{1), 3)}		각각 30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mg/kg) ⁴⁾	300 이하	
	총 카드뮴(Cd) (mg/kg) ⁵⁾	75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 ⁶⁾	DBT(dibutyltin) (mg/kg)	1.0 이하	-
	TBT(tributyltin) (mg/kg)	0.5 이하	1.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⁷⁾ (%)	DEHP(Diethylhex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0.1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니켈 용출량 ⁸⁾ ($\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비고

1. 가죽 또는 모피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염색한 가죽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4.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기준치를 90 mg/kg 이하로 한다. 단,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한다.
6. 가죽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7.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가죽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품을 구성하는 가죽 부위 중 제품 걸감(신발의 경우 갑피)의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4.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구조

5.1.1 작은부품 부착강도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5.2를 따른다.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text{ N} \pm 2\text{ N}$).

5.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A세탁법)**에 따라 세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의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5A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 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

5.1.2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ISO 17075**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ISO/TS 16186**에 따른다.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5.2.6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8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2]**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

조자명 (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표 2] 개별제품 표시사항

- | |
|-------------------|
| 1. 품명 |
| 2. 재료의 종류 |
| 3. 제조자명 |
|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 5. 제조국명 |
| 6. 제조연월 |
| 7. 주소 및 전화번호 |
| 8. 치수(권장) |
| 9. 취급상 주의사항 |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6.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6.3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 표시방법

세부 표시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 가죽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른다(단,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를 권장한다).

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0109호(2015. 6. 4.)

개 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017호(2017. 1.31.)